

참고자료 2. 2011년 산업·발전부문 중소기업(사업장)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보고서 작성 지원사업 공고

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2011년도 산업·발전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중소기업(사업장)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보고서 작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사업목적

-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, 중소기업(사업장)의 온실가스 배출원 규명 및 배출량 산정, 명세서 작성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, 경영부담을 완화

2. 사업내용

- 중소기업(이하 “관리업체”)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원 규명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, 사업장별 담당자 1:1 교육 실시

[사업①]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

- 관리업체 사업장별 조직경계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여,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별로 모니터링 및 배출량산정 체계를 설정하고,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벤토리 활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 실시
- 인벤토리는 ‘사업장’ 단위로 구축하되, 다수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‘업체’는 사업장별 인벤토리를 종합한 ‘업체’ 단위 인벤토리를 구축.
- * 단, 동일 ‘업체’ 소속 사업장은 반드시 동일한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.

[사업②] 배출량보고서 작성 지원사업

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관리업체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(‘07~10년), 이행계획, 이행실적 등 3대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, 작성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실시
- *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은 정부와 관리업체간의 목표협의를 거쳐 ‘11.9월 확정되는 바, 본 사업에서는 가상의 수치를 활용하여 모의 작성
- 관리업체와 수행기관(컨설팅업체 및 진단기관)은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(이하 “통합지침”*)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, 본 지원사업에는 명세서 검증**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
- * 상기 통합지침이 고시되면 지침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사업 수행
- ** 통합지침에 따라 명세서 검증을 위한 제3자 검증기관이 선정될 예정임
- 관리업체는 필요에 따라 사업① 또는 사업② 중 하나의 사업만을 택일하여 신청 가능하나, 사업①과 사업②를 모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성 등을 위해 반드시 동일한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

3. 사업기간 : 계약시 ~ 2011. 4.29

4. 지원개요

- 지원대상 : 산업·발전 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 中 중소기업
 - *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-179호(2010.9.30, 산업·발전분야 온실가스·에너지 관리업체 고시)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-217호(2010.11.30, 산업·발전분야 온실가스·에너지 관리업체 변경고시) 참조(첨부9)
- 지원금액 및 조건 : 관리업체와 수행기관의 계약금액(표준계약서의 전체 계약금액)의 50% 이내에서 사업장 단위로 지원하며, 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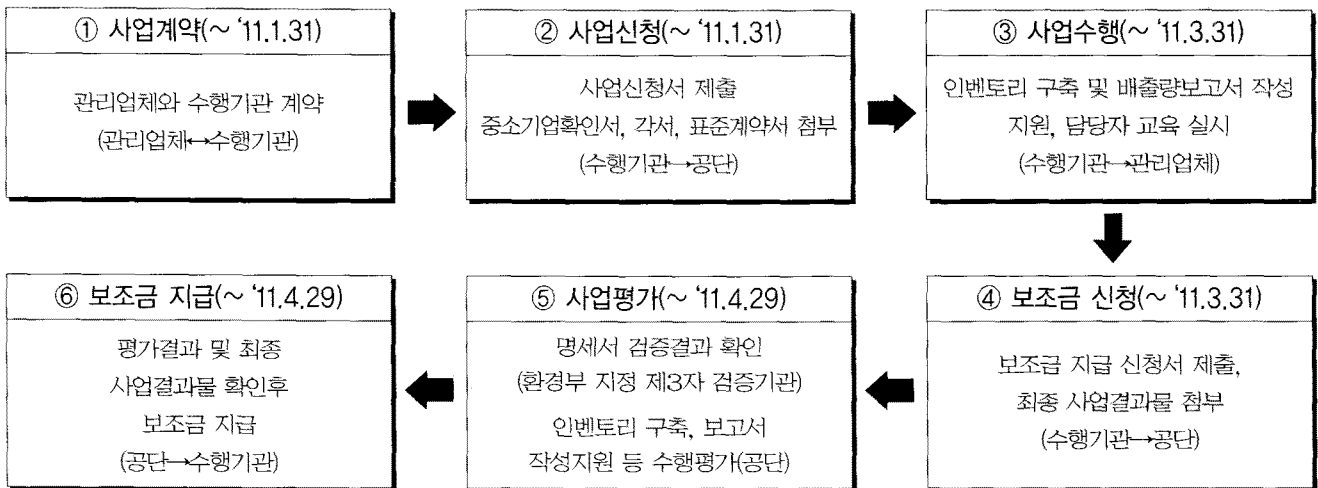
[사업①]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

	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(tCO ₂)		
	25천이상~35천미만	35천이상~75천미만	75천이상
금액(천원/건)	16,500이내	17,500이내	19,000이내

* 관리업체의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 평균('07~'09년)을 기준으로 함

[사업②] 배출량보고서 작성 지원사업 : 3,500천원이내

5. 사업 추진절차



* 관리업체는 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」 및 통합지침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고,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2011.3.31일까지 정부에 제출(제출시한 변동 가능)

① 사업계약

- 사업계약 (관리업체+수행기관)
 - 관리업체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(첨부3)를 첨부하여 수행기관과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보고서 작성 지원사업 계약 체결, 단 이 경우 표준계약서(첨부1)만 인정됨
 - * 수행사업의 범위(사업①, 사업②, 사업①+사업②)에 따라 계약서는 수정 가능함
 - 관리업체는 본 공고문에서 지정한 수행기관(첨부8)과만 계약 가능하며, 이외의 기관과 계약할 경우 지원하지 않음
 - 수행기관은 지정된 업종과 물량한도 내에서만 사업 수행 가능하며, 계약시 수행내용, 인원, 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서(별도양식 없음)를 첨부하여야 함
 - * 사업자 선정결과 안내문 참조('10.12.23, 공단홈페이지 공지사항)

② 사업신청

○ 사업신청 (수행기관→공단)

– 수행기관은 첨부서류(사업수행계획서, 각서(첨부2))를 포함하여 표준계약서(첨부1), 관리업체의 중소기업확인서(첨부3)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(첨부4)를 작성, 에너지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)에 사업을 신청

○ 신청결과 통보 (공단→수행기관)

– 공단은 제출된 신청서 등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등 신청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

③ 사업수행 (수행기관→관리업체)

○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보고서 작성 지원 등 사업수행

* 수행기관은 인벤토리 활용방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 사업장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후 교육결과보고서 작성

④ 보조금 신청 (수행기관)

○ 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신청서(첨부7) 등을 2011. 3.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며, 공단은 수행기관에 신청서 등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
* 제출시기는 통합지침 고시 및 명세서 제출기간 변동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

– 수행기관은 인벤토리 보고서(첨부6을 참고하여 작성) 및 배출량 보고서(명세서, 모의 이행계획, 이행실적) 등 최종사업결과물과 사업수행 확인서(첨부5), 관리업체의 명세서 검증결과를 첨부

⑤ 사업평가

○ 사업평가는 평가①과 평가②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

[평가①] 명세서 검증 (검증기관)

– 명세서에 대한 평가는 통합지침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하는 검증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(적정, 조건부 적정, 부적정)에 따름

《명세서 검증 관련 참고사항》

* 명세서의 검증은 본 사업과는 무관하며, 검증비용은 관리업체가 별도 부담

** 수행기관이 향후 검증기관으로 지정될 경우, 본 사업계약의 당사자인 해당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검증을 실시할 수 없음 (통합지침 요구사항)

[평가②] 사업수행 평가 (공단)

– 공단은 인벤토리 구축여부 및 보고서 작성지원 등 수행기관의 수행평가를 위해 관리업체를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현장검증시 관리업체와 수행기관은 적극 협조해야함

⑥ 보조금 지급 (공단)

○ 공단은 평가결과 및 최종 사업결과물을 검토하여 수행기관에 보조금 지급

– 보조금은 보조금 상한액 이내에서 수행기관에 지급하며, 명세서 검증결과 및 사업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

–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수행기관이 부담

6. 유의사항

○ 사업 대상

-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 것
- 업종은 관리업체 고시를 기준으로 함(첨부9)
- 수행기관별 참여업종과 물량기준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, 물량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수행기관 선정결과 안내문 참조('10.12.23, 공단홈페이지 공지사항)
- * 단, 광업 업종은 전체 선정 수행기관에서 참여 가능함

○ 보조금 지급

- 보조금은 관리업체와 수행기관이 체결한 계약금액(부가가치세 제외)의 5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조금 상한선 이내에서 지원함
- *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, 해당금액은 수행기관이 부담
- 관리업체는 계약금액 중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행기관에 지급함
- 수행기관은 공단에 사업신청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지급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하며, 미 첨부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

○ 기타

- 수행기관은 관리업체(사업장)별 인벤토리 구축 결과(보고서 포함) 및 배출량보고서를 공단에 2011. 3. 31까지 제출해야 함. 단, 통합지침 및 명세서 제출기간 변동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
- 다음의 경우 공단은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. “가”와 “나”에 해당하는 경우, '12년까지 산업·발전부문 목표관리 관련사업 참여(수행기관) 및 지원(관리업체)이 제한됨.
 - 가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
 - 나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
 - 다. 수행기관이 관리업체의 분담금을 받지 않은 경우
 - 라. 사업기간의 임의변경

7. 사업 신청방법

○ 사업신청서 제출기간 : 2011. 1. 6(목) ~ 2011. 1. 31(월)

○ 제출방법

- 제출처 :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
- * 주소 :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대로 298 (우 : 448-994)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- * 우편은 제출기간 말일 도착 분까지 유효

○ 제출서류

- 사업 신청서 1부.
- 표준계약서 1부.
- 중소기업 확인서 첨부 1부.
- 각서 1부(표준계약서 첨부물).
- 사업수행 계획서 1부(표준계약서 첨부물).
- *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○ 문의처 :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

- 담당팀 : 진단관리팀
- 전 화 : 031-260-4442~3
- 팩 스 : 031-260-4409

8. 사업 신청이후 진행사항 안내

※ 아래 일정은 통합지침 및 명세서 제출기간 변동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, 일정 변동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함

- ~ '11.1.31 : 수행기관과 관리업체는 본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, 수행기관이 공단에 사업신청서 제출. 공단은 신청결과를 수시 통보
- ~ '11.3.31 : 수행기관은 사업수행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(수시 제출 가능)
- ~ '11.4.29 : 공단은 명세서 검증 등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보조금 지급

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보고서 작성 지원사업 참여 수행기관 현황

□ 업종별 참여 수행기관 현황

업종	수행기관 (가나다순)
기 계	부산도시가스, 에너제닉, 에코센스, 에코아이, 에코아이이앤씨, 한미설비, 휴다임
반 도 체	그린컨테크, 리차드컨설팅, 성림산업개발(주), 에코네트웍, 한국생산성본부
비 철	아택에너지, 알씨씨, 에너지관리기술, 에이치알엔지니어링(주), 에코아이, 하나기연
석유화학	구성이앤드씨, 가장엔지니어링, 대일이앤씨기술(주), 삼천리, 삼환이엔테크, 성림산업개발(주),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, 아택에너지, 에너지관리기술, 에이치알엔지니어링(주), 에코네트웍, 에코센스, 에코시안, 에코아이, 카이트엔지니어링, 하나기연, 한화종합기술단, 휴다임
섬 유	에너지서베이, 에너킵, 에스코프로, 에이치알엔지니어링(주), 에코네트웍, 에코센스, 에코아이이앤씨, 엔베스트, 한화종합기술단
시 멘 트	구성이앤드씨, 알씨씨, 인광환경
요 업	대일이앤씨기술(주), 삼천리, 한화종합기술단, 휴다임
자 동 차	신일이앤씨,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, 알씨씨, 에너킵, 에코센스, 한국생산성본부, 한미설비, 휴다임
발전·에너지	그린컨테크, 그린플라리스, 에코센스, 엘아이지시스템
제지목재	기성이앤씨, 아택에너지, 에너지관리기술, 에너지서베이, 에코네트웍, 에코아이, 에코와이즈, 엘아이지시스템, 하나기연, 휴다임
철 강	부산도시가스, 삼정KPMG,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, 알씨씨, 에너킵, 에스코프로, 에이치알엔지니어링(주), 에코네트웍, 한화종합기술단, 환경품질경영연구소
광 업	참여 수행기관 전체